



© UNICEF/NYHQ/2009-4870/SOIC/L

#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원칙

1 2 3 4 5 6 7 8 9 1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번역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은 원문이 영어인바, 이번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문과 번역본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5 가 24 번지 파크타워 103 동 1705 호 140-025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ungckorea@gmail.com](mailto:ungckorea@gmail.com)

## 서문

18 세 미만의 아동 인구는 세계 인구의 1/3 을 차지 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기업들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은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소비자로서, 직원의 가족으로서, 연소 근로자로서, 그리고 미래의 근로자, 또는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와 환경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정부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회 안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아동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회구성원이라 할 수 있으며, 공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집단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대해 (학교나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계획과 같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까지도) 의견을 표현하거나 조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기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아동기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과 복지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위험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생리적으로 아동은 성인보다 공해나 오염 물질을 쉽게 흡수하고 면역 또한 약합니다. 그들의 면역 체계는 더 훼손되기 쉽고 취약합니다.

아동 노동자들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아동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공급망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어린이들, 회사의 부지안이나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직원 숙소에 가정부로 고용된 아이들, 기업의 제품에 노출된 아이들, 보안기관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아이들,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아동노동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은 이를 이루기 위한 기준 및 행동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기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다양한 방법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즉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 방법 및 유통 서비스를 통한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정부와의 관계 및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영향도 포함합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존중과 지원은 기업들이 아동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동인권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기업 핵심 전략 및 운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강화시킬 수 있고,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은 좋은 평판을 구축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사회로부터 영업면허(Social license to operate)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인권에 대한 헌신은 우수한 인력의 채용 및 직원의 동기 부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부모 및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고용을 촉진시키며 청소년 인재들을 격려하는 등,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필요에 더 잘 맞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노력은 곧 혁신의 원천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업활동은 안정적이며,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잘 교육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은 아동 인권과 복지에 미치는 기업들의 영향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니세프는 이 원칙들이 여러 기업들에게 영감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은 기업들이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38 호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Convention No. 138)와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제 182 호 (Minimum Age and Convention No. 182 on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 조 (Article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는 아동 최선의이익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권리와 관련된 원칙들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합니다:

### **기업의 존중책임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아동권리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행동에 대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고유 활동뿐만 아니라 그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모든 단체와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 **기업의 지원의지 (The Corporate Commitment to Support)**

인권 존중에 더하여, 기업은 핵심 활동(Core Business), 전략적 사회 투자(strategic social investments), 자선 활동 (philanthropy), 옹호 (advocacy), 공공 정책 참여 (public policy engagement), 파트너십이나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 등을 통해,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자발적 활동을 실행합니다.

기업의 아동 권리 존중책임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요구 사항입니다. 반면, 기업의 아동권리에 대한 지원 활동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강하게 촉구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의 각 원칙은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서술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아동권리"와 "아동인권"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 용 어

이 용어집에 정의된 용어는 모두 본 문서에 굵은 글씨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아동'과 '기업' 제외).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핵심 원칙 중에 하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 적용 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권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권리 존중과 아동의 생존, 성장 및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업 (Business):** 영리기업

**사업 관계 (Business Relationship):** 기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가치사슬내에 존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공공 또는 민간 조직체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참가하는 소주주 및 대주주 뿐아니라, 가치사슬의 첫번째 공급자 및 그 이후의 단계에 있는 공급자와의 간접적인 관련도 포함합니다.

**아동 노동 (Child Labour):** 어린이들의 잠재성과 존엄성을 박탈하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및 도덕적 성장에 해가 되는 노동을 뜻합니다. 아동의 교육에 침해가 되는 작업 또한 포함합니다. 국제 최저연령 기준 및 자국의 최저고용연령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 조건 및 일반적으로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하는 모든 작업은 18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금지되어있습니다. 인신매매, 성 착취, 강제노동, 노예 및 소년병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성 착취 또는 가정부로 강제노역을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ILO 기본협약에 관련되는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아동참여 (Child Participation):**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핵심 원칙 중에 하나인 아동 참여의 원칙에서는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에 아동과 성인간의 정보 공유 및 대화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적이고, 포용적이며 의미있는 참여여야 하며, 아동의 능력 발달을 고려하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합니다. 여아, 남아,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의 어린이, 나이와 능력이 상이한 어린이 등 다양한 어린이들의 의견을 고려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아동참여가 단지 상징적인 행위에 그쳐서는 안되고, 악용해서도 안됩니다.

**아동보호 행동강령 (Child Protection Code of Conduct):** 아동과 접촉하게 되는 기업 활동에서 직원의 행동에 대한 상세한 요구 사항을 담은 문서입니다. 행동강령은 폭력, 착취 및 학대에 대한 기업의 무관용 원칙을 이행합니다. 행동강령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기본 체계로 사용하며, 폭력,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마련됩니다.

**아동 (Child or Children):**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따르면, 아동은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성년에 달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자리 (Decent Work):** 생산적이고 공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직장 내 보안,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직장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기 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며, 동등한 기회와 대우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위급상황 (Emergencies):** 무력충돌, 광범한 폭력사태, 전염병, 기근,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및 법적 질서의 붕괴 때문에 아동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신체적 및 정신적 복지, 또는 발전의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

**인권의 충분한 주의의무 (Human rights due diligence):** 인권의 충분한 주의의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인권 영향(아동 인권 포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동하며, 응답을 추적하고 그 영향을 다루는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인권의 **충분한 주의의무**는 기업이 기업의 독자적 활동이나, 사업 관계를 통해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활동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다룹니다. 기업들이 인권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인권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 이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하고, 아동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미깊은 상담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된 내부 부서에 걸친 영향 평가 결과를 통합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함. 기업이 아동 권리에 대해 부정적 영향에 원인이되거나 기여한 사항에서, 기업은 그 활동을 멈추거나 방지하며, 아직 남아있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업 관계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연계되었다면, 기업은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기업이 가진 영향력을 사용하고, 다른 적절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적합한 양적·질적 지표를 사용하고, 연관된 아동, 가족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같은 내외부적 피드백을 이용하여 아동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대처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업 대응의 효과성을 추적하고 점검함. 기업은 성과 계약 및 평가, 설문조사 및 감사 (자체적으로 받는 독립 감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인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을 다루기 위해, 그 영향을 반영하고



의도한 대상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식과 빈도를 갖추어 내외적 커뮤니케이션을 준비. 기업은 그 기업 대응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연관된 이해관계자, 직원 또는 상업적 기밀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영향력 (leverage):**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기여하는 단체가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영향력을 말함.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본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 및 사업 관계를 통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시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인센티브 (incentive) 또는 협업 (collaboration) 등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사업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이때, 비즈니스 관계의 중요도와 타 기업이 미치는 영향의 심각도 또한 기업관계 종료 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또한 고려합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을 준수합니다.

**무차별 (non-discrimination):**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무차별 원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등 어떠한 종류의 구분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대의 잠재력 개발을 각 아동에게 보장합니다.

**정책 추진의지 (Policy Commitment):**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설명 된 대로, 기업은 인권(아동 인권 포함)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 추진 의지는, 기업 대표자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서비스와 제품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추진의지는 공식적으로 접근가능하고, 기업 내외부적으로 의사소통되어야 하며, 관련된 정책과 절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진의지에는 인권 지원을 위한 기업의 의지를 나타내는 성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권개선책(Remediation):**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에 대응하고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과정임.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기업은 효과적인 운영 레벨 고충처리제도나 사법적 매커니즘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그 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운영 레벨 매커니즘은 여아와 남아, 또한 그들을 대변하는 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제31호에 설명되어 있는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효과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존과 발달 (Survival and Development):**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핵심 원칙 중에 하나로서,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제도, 건강, 충분한 영양섭취, 생활 수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교육, 레저와 놀이 등의 권리는 아동발달에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또한 아동 생존과 발달에 중요합니다.

**가치사슬 (value chain):** 가치를 부과함으로써 투입을 산출로 변화시키는 기업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업 관계가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하거나 기업으로 부터 제공받는 조직을 포함합니다.

**연소근로자 (young worker):**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취업의 최저연령 이상의 아동임. 근무 조건이 위험한 경우 아동 노동으로 지정 될 수 있는 연령 그룹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어린이들이 아닌 지구의 구성원이며 시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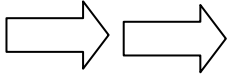
2002년 5월 5-7일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아동포럼 발표문, 유엔아동특별총회

### **아동에 대한 사실**

- 세계에는 22억의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지구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숫자입니다.
- 연령이 10세에서 19세까지 되는 청년들은 지구 전체 인구의 1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10억 명의 어린이들이 생존과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세계에는 2백만 명의 HIV 감염된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 2억 천 5백만 명의 어린이들은 아동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1억 6백만 명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5백 십만 명의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통계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 하십시오:

<http://www.childinfo.org/index.html>

<p><b>모든 기업들은</b></p> 	<b>1</b>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 인권을 지지하는 데에 충실해야 합니다.
	<b>2</b>	기업 활동이나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아동노동을 철폐하는 데에 기여해야 합니다.
	<b>3</b>	연소근로자, 부모 그리고 양육자들을 위해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b>4</b>	기업 활동과 회사 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b>5</b>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함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인권 지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b>6</b>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위한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합니다.
	<b>7</b>	환경, 토지 취득 및 이용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b>8</b>	안보조치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b>9</b>	비상사태로 영향받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b>10</b>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 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 서 언

모든 아동은 언제 어디에서나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의 모든 권리들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동인권과 비즈니스 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은 기업들이 직장, 시장, 지역사회 등의 환경에서 기업활동과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아동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아동권리에의 악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아동인권을 추구하는 방법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과 비즈니스 원칙'은 기업과 아동에 관한 기존 및 미래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핵심자료가 되는 동시에,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규모, 업종, 지역, 소유 및 구조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원칙들은 정부와 시민 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구성요소들이 기업과 협력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아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성인과 다른 생존 및 발달의 요구사항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은 특히 비상사태 시에 폭력, 착취, 학대로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기후변화나 오염으로부터 받는 피해는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은 가정, 지역과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소비자이자 미래의 근로자 또는 미래의 기업리더로서,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또한,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와 환경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그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동인권과 비즈니스 원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아동 인권에 근거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적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들에서 나오는 원칙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인권조약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한 조약으로, 현재 193 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38 호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Convention No. 138)' 과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제 182 호 (Minimum Age and Convention No. 182 on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에서 비롯되는 원칙도 있습니다.

'아동인권과 비즈니스 원칙'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United Nations Global Compact's 'Ten Principles') 및 유엔난민기구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ndorsed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같은 기존의 기업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정부는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주체 또한 아동인권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아동인권과 비즈니스 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기업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특정 국가의 법 또는 국제법의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의 적용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원칙은 아동, 기업, 투자자, 노동조합,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정부, 학계, 유엔기구, 아동 인권 전문가들 및 기업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 주체와의 상담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 1. 모든 기업들은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 인권을 지지하는 데에 충실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들을 위한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아동권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원칙들을 인식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나 부모, 지역 사회나 민간부문이 취할 수 있는 아동 관련 행동들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의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네가지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 무차별; 아동참여; 생존과 발전** 입니다.

### b.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을 다합니다.

이는 아동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이 연관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인권에 반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업의 존중 책임은 기업의 자체적 활동과 기업이 맺고 있는 사업 관계에 적용되며, 이는 다음의 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활동과 관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에 의해 승인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명시된 적합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i. **정책 약속:**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에서 제사된 바와 같이,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제반 권리들을 존중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을 제시한 성명임. 정책 약속은 최대한 기업의 고위급에서 승인되어야 하며 연관된 전문가들에 의해 알려져야 합니다. 또한 이는 모든 직원, 기업 파트너, 기업의 운영 및 제품이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에 대한 아동 인권 관련 기대 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개되어야 하고, 내외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정책과 절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또한 아동인권을 지지하는 기업의 추진의지에 대한 성명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ii. **인권의 충분한 주의의무 (Human Rights Due Diligence):** 기업의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인권관련(아동인권 포함)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동하며, 응답을 추적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소통하는 지속적인 절차. 인권의 충분한 주의의무는 기업의 자체적인 활동이나,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관계에 의한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인권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인권에 대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모든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할 것. 이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하고 아동들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인 집단이나 이해관계자와의 의미깊은 상담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된 내재적 기능과 과정에 걸쳐 영향평가의 결과를 통합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기업이 아동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원인이 되거나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기업은 그 활동을 멈추거나 방지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업 관계에 의해 통해 부정적 영향과 연계되어 있다면, 기업은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 영향력을 활용하고 다른 연관된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적절한 질적, 양적 지수를 사용하고,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내부적, 외부적 소식원들로 부터 반응을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



대응의 효과성을 모니터할 것. 기업은 주기적으로 계약 수행, 보고서, 설문조사 및 감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인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대외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그 대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영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빈도로 진행할 것. 기업은 그 기업 대응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연관된 이해관계자, 직원 또는 상업적 기밀에 위협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ii. **교정을 위한 아동 친화적 절차:** 아동인권에 기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절차. 기업이 아동인권에 대한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되는 경우, 기업은 실무수준의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나 사법적 매커니즘을 포함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그 교정을 위해 함께 협조하거나 노력해야 합니다. 실무 수준의 제도들은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실무 수준의 제도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의 31번째 원칙에 나와있는 비-사법 제도를 위한 효과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c. 아동 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 약속을 합니다.**

아동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기업은 자체의 활동과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아동 인권을 지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핵심 기업 활동이나 전략적인 사회적 투자, 자선, 옹호 그리고 공공 정책 참여, 파트너 및 공동 행동 참여가 있습니다. 아동 인권을 지지하는 기회에는 종종 기업의 '인권의 충분한 주의의무'의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며, 이것은 아동과 그 아동의 가족들, 그리고 아동인권에 적합한 전문가와의 면담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 인권을 지지하는 자발적 행동은 아동 인권 존중을 위한 행동을 대체하기 보다는 그것과

더불어 행해져야 하며, 아동 권리의 핵심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d. 아동권리를 지키는 챔피언이 됩니다.**

기업은 아동 인권, 이러한 원칙들 그리고 공급자, 기업 파트너 등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최선의 기업 관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우수사례: 고충 처리 채널 만들기**

국제적인 의류 회사가 방글라데시의 현지 공장의 고충처리 접근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아동 및 여성 인권을 위한 비영리 기구(NGO)와 협력하였습니다. 이 NGO는 아동과 여성 인권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접근 포인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일터의 문제에 관해 의류 회사와 연락할 수 있는 안전하고 대안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의류회사가 보상을 위해 공급처 공장을 참여시키는 고리를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2. 모든 기업들은 기업 활동이나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아동노동을 철폐하는 데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존중 책임은 'ILO 근로자기본권선언'의 권리들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을 위한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아동노동을 철폐합니다.

그 어떠한 종류의 아동노동을 통해, 아동을 고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채용 과정의 일부분으로 철저한 나이인증 제도를 만들고, 가치 사슬에서도 이 제도가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현장에 어린이들이 있는지 주의합니다. 업무 현장에서 아이들을 내보낼 때에, 피해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 그리고, 필요하다면 성인 가장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동 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업체와 하청업체 공급자 대한 압력은 지양해야 합니다.

### b. 연소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방지하며, 줄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금지된 일이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넘어서는 일로부터 보호합니다.

연소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방지하며 줄일 것. 그리고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금지된 일이나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넘어서는 일로부터 보호할 것. 아동의 건강, 안전 그리고 도덕 관념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일들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위험한 노동을 하는 아동들은 위험 요소로부터 즉시 내보내져야 하고, 이러한 개입의 결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수입의 손실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아동들이 어른들에 비해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아동들의 알 권리, 결사, 단체 교섭, 참여, 무차별, 사생활의 자유 및 업무현장에서의 모든 -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따돌림과 성폭력 등 그 외의 치욕스러운 고통들을 포함한 - 폭력으로부터 보호와 같은 것은 특별히 더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지원을 위한 추진의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c.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솔루션과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할 것
  - i. 아동교육과, 아동노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지역사회, 아동 인권 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와 함께 일할 것.
  - ii. 지역 사회 구성원 및 아동들과의 협력으로 아동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동원, 인식 제고 및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더 광범한 사회적, 국내외적 노력을 지지할 것.
  - iii. 다른 기업, 부문별 단체 그리고 고용자 단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아동노동을 다루기 위한 산업 전반의 노력을 구상할 것. 또한, 노동조합, 사법당국, 노동조사단 등과 협력할 것.
  - iv.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노동과 관련해 고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것.
  - v.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노동에 대처하는 핵심 정책 및 제도적 매커니즘의 일원으로 국가적인 활동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지지할 것.
  - vi. 최소 고용 연령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년 고용, 능력개발, 직업 트레이닝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 vii. 공경제에서의 생산에만 집중하고 아동노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공식적인 근로 작업을 지양할 것.

**우수사례: 아동노동의 근본적인 해결책 찾기**

어느 세계적인 가구 기업은 그 기업의 공급망에 있어서 아동노동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아동노동이 발견될 경우 공급자들은 시정 조치가 시행되도록 지원됩니다. 이 시정조치는 아동의 나이, 가족, 처해있는 상황, 교육 수준 등 아이 최선의 이익(child's best interest)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아동노동이 한 공급 업체로부터 다른 공급업체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실행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이 기업은 농촌에서의 아동노동을 막고 근절하기 위해 아동 인권 단체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이 파트너십에서는 소년 소녀들이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기 위한 학교 입학과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지역 여성들의 신용 개선·소득 창출을 통해 경제·사회·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여성들간의 자조 집단의 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아이들을 일터로 내보내는 데에 큰 원인인 부채의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3. 모든 기업들은 연소근로자, 부모 그리고 양육자들을 위해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들을 위한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연소근로자들을 위해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최저고용연령인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일터에서 사회적 대화와 권리를 촉진하며, 안전한 노동 조건을 제공하고, 폭력이나 착취에서부터 보호하고, 각자의 성별에 적합한 물, 청결한 위생시설을 제공합니다.

**b. 최저고용연령의 연소근로자가 처한 취약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 i. 기업들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과 연소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약속을 최고위 경영진의 차원에서 도입하고 지지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위험한 업무로부터 최저고용연령의 연소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근로 시간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한 기계부품이나 장비 사용뿐 아니라 높은 곳에서의 업무; 무거운 짐의 운송; 유해한 물질에의 노출이나 밤근무 또는 고용주의 부지내에 비합리적으로 갇혀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조건.<sup>1</sup>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더라도, 경영진은 이러한 정책을 이행할 책임을 주류화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 ii. 직장내의 희롱에 관한 기업 정책은 연소근로자들의 취약한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충처리제도는 연소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iii. 기업은 연소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경영진에게 요구하고 노동조합 및 그 대표들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연소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모니터 하기

---

<sup>1</sup>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R190', 1999,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R190>에서 확인.

위해 연소근로자 대표의 선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노동조합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지원을 위한 기업의 추진의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c. 연소근로자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보호, 건강 정보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연소근로자들에게 *적당한 일자리*의 기회 제공을 촉진할 것. 양질의 교육과 관련 직업 훈련 및 생계 프로그램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기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d.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녀 근로자들에게도 *적당한 근무 조건*을 제공할 것**

법적 준수 여부를 떠나 다음과 같은 근무조건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최저임금 지불, 근무시간의 길이와 유연성, 임신부와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들을 위한 규정, 육아 휴가의 필요성, 원거리 양육을 하는 이주노동자 및 계절근로자 지원, 자녀들을 위한 질 좋은 보육, 보건, 교육에의 접근성 증대.

**우수사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원거리 양육 지원**

영국에 소재해있는 다국적 기업 중 하나는 2009년 중국의 여성 NGO와 함께 중국 10개 성의 이주노동자의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협력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60만 가구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에, 아이-부모간의 전화카드인 '러브카드'가 발급되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간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중국의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노동자들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5천 8백만 이 넘는 아이들이 농촌에 남겨지는데 이것은 중국 농촌의 아이들 중 30프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4천만의 아이들은 14세 이하입니다.

#### **4. 모든 기업들은 기업 활동과 회사 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의 존중책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a. 기업 활동을 하면서 회사 시설이나 직원의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아동인권 관련 안전과 보호 리스크를 다루어야 합니다.
  - i. 기업 시설이 아동을 학대, 착취하거나, 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ii. 업무기간 동안이나 그 외에도, 기업 시설 중 잠재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곳들이 아동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iii. 폭력, 착취, 학대와 관련된 기업의 무관용 정책이, 기업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킵니다.
  - iv. 폭력, 착취, 학대에 관한 우려가 나타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v. 최저고용연령의 연소근로자들에게 위험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원의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b. 아동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기업 활동을 위한 아동 보호 행동강령을 만들어 낼 것. 이 행동강령에관련 진행 중인 교육 및 그에 관한 인식을 보장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이 기업 활동, 비즈니스 관계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개발될 것을 권고 합니다.



### **우수사례: 성적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

어떤 글로벌 관광/여행회사는 성적 착취와 아동 인신 매매에 대처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The Code' (관광 여행업계에서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이 기업은 모든 공급자에게 계약서에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 규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조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동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 직원 교육의 프로그램에 도입되었습니다. 2011년 말 이후, 이 기업은 아동 인신 매매와 성적 착취의 빈도수가 높은 나라들에게 미국에서 발행된 전자 여행 일정표에 특별한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성적 착취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긴급 직통 전화 번호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또한 이 문제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하여 아동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5. 모든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함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인권 지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출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대신 누가 제품을 소비하고 아동에게 위험한 제품을 파는 것을 막는 데에 도움을 주는 지를 더 알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젊은이들, 아동인권과 기업 원칙 이니셔티브를 위한 아동 상담, 2011

기업의 존중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a. 아동들이 소비하고 사용하는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험이 관련 국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 b. 아동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가 안전하고 아동들에게 어떠한 정신적·도덕적·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합니다.
- c. 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서비스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러한 조치는 무차별, 정보 접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 d. 제품/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아동들을 향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 e.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동들을 학대, 착취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가 가진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에 노력합니다.

기업의 지원의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f.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제품/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극대화 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g. 제품/서비스를 통해 그리고 이의 공급을 통해, 아동 인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강구합니다.**

**우수사례: 자동차 안전에서 아동에게 초점 맞추기**

미국의 자동차 제조 기업 중 하나는 연구에 있어서 아동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로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 전문 분야에서 소아과 의사, 심리학자, 통계학자, 전염병학자와 기술자가 한 팀을 이루어, 부상 예방의 복잡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어떻게 과학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살리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낼지를 연구 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업은 아동들이 단지 작은 어른이 아님을 인식하고, 성인을 위한 피해 예방 연구가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음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특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아동들이 많이 앉는 것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아동을 위한 특별한 안전 안전제어장치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 6. 모든 기업들은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위한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현실적인 자아상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협력하여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아름다움을 강조시키고 정직함, 지적임, 진실성, 너그러움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넘어선 미덕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요르단의 16세 소녀, 2011 세계 아동들의 상황

기업의 존중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a.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이 아동인권에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방송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적용됩니다. 마케팅은 차별을 심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제품 라벨링과 정보는 명확, 정확, 완전해야 하며, 부모와 아이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힘도록해야 합니다. 아동인권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동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들이 조종당할 수 있는 가능성, 비현실적이거나 성적인 그림이나 고정관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

### b. 보건 마케팅과 관련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의 기업 운영 기준을 준수합니다.<sup>2</sup>

모든 나라에서 보건과 마케팅과 관련된 세계보건총회의 기업 운영 기준을 준수합니다. 만약 국가의 법이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기업들은 그 수준을 따라야 합니다.

<sup>2</sup> 보건과 마케팅에 관한 세계보건총회의 수단 중에는,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1981)과 후속적으로 연관된 세계보건회의의 결의안 (두 개에 영향을 미치도록 많은 나라들에 보급된 국가적 차원의 방안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2003); 아동들에게 식품과 무알콜 음료 마케팅에 관한 일련의 권고; 그리고 세계보건회의의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전략(2010)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원의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c. 긍정적 자아 존중감, 건강한 생활방식, 비폭력적인 가치, 아동인권 등을 촉진시키고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것.

**우수사례: 활동적인 삶을 누리고 즐길 권리 증진시키기**

유럽의 어느 세탁 비누 브랜드는 아이들이 놀고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즉 그들이 '아동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케팅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탐구, 놀기, 활동과 운동의 가치가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하며, 아이가 그 과정에서 더러워 질 수 있더라도 건강하고 완전한 삶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시리즈의 TV 광고를 통해 놀이와 활동적인 생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7. 모든 기업은 환경, 토지 취득 및 이용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매년, 약 3백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환경 관련 질병으로 인해 죽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동 건강과 환경을 위한 전 지구적 행동 계획 (2010-2015)

기업 책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a.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 i. 환경 및 자원 사용 전략을 계획하거나 시행할 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천연 자원에서의 접근성을 줄임으로써 기업 활동이 아동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ii. 비상시 계획, 그리고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 손상 개선책에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의 권리들이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b. 기업 활동을 위한 토지 취득 및 토지 이용 관련 인권 고려 사항의 필수적 부분으로서 아동 권리를 존중합니다.

- i. 사업적 목적의 토지 취득이나 토지 이용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이동을 최대한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사회와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의미 있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 인권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감지하고 이에 대처하며, 또한 지역사회가 자신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항에 관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칠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토착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정보 제공 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며, 이는 기업의 토지 취득이나 이용에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 ii. 재정착과 보상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아동 인권을 -

특히, 아동의 교육, 보호, 건강, 적절한 음식, 적당한 수준의 생활과 참여 – 존중하십시오.

**지원을 위한 기업의 추진의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c. 미래 세대가 생활하고 성장할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 권리를 지지합니다**

기업 활동에서 방출되는 온실 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한 이러한 활동과 기타 계획들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식합니다. 재해 위험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기회들을 찾고, 기후 변화의 결과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지원합니다.

**우수 사례: 초등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배우다.**

인도의 어느 선두적인 기업은 초등학교와 학생들이 – 청소년, 부모, 선생님, 동료, 그리고 크게는 지역 사회와 함께 – 초과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에너지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자, 그 기업은 이 심각한 전력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청소년들을 동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2007년, 뭄바이 지역 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에너지 절약 이슈들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이 정보를 가족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이니셔티브는 250개가 넘는 학교를 동참시키고, 1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전국적 운동이 되었습니다.

## 8. 모든 기업은 안보조치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전쟁과 정치는 항상 어른들의 게임이지만, 피해자는 언제나 아이들입니다”*

Eliza Kantardzic, 17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200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아동과 무력충돌에 관한 회담에서

### 기업 책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a. 안보 조치 관련 아동 인권을 존중합니다.

- i. 공공, 민간 안전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하여 안보 조치들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아동의 권리에 끼칠 부정적 영향들에 각별히 주목하며, 인권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행하여야 합니다.
- ii. 기업의 안보조치 계약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확실히 명시되도록 합니다.
- iii. 안보 조치에 있어 직접, 또는 공공, 민간 안전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모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을 위한 기업의 추진의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b. 안보 조치 관련 아동의 권리를 지원합니다.

모든 기업은 민간 계약업체나 공공 치안 부대가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 운영에 있어 발전하고 있는 우수 사례들을 진화시켜 응용하도록 장려됩니다.



**우수 사례: 보안과 인권에 대한 자발적 원칙**

2000년에 설립된 “안전과 인권에 대한 자발적 원칙”은 -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그리고 기업들이 만든 이니셔티브로서 - 채굴산업과 에너지 산업 기업들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내에서 기업 운영상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자발적 원칙들은 특별히 석유, 가스, 광산 회사들을 위하여 고안된 인권 가이드라인이며, 리스크 평가, 공공 안전, 민간 안전의 세 분야를 다룹니다. 자발적 원칙에 언급되어 있듯이, “참여자들은 전 세계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과 시민 사회가 - 비정부기구, 노동조합들, 지역 사회들을 포함한 - 이러한 목표들을 촉진시키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9. 모든 기업은 위급상황으로 영향받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업들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비상사태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위급상황을 감소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브라질의 젊은 청년들, 아동 권리와 비즈니스 원칙 이니셔티브를 위한 아동 협의회

### 기업 책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a. 위급상황에서 아동 권리를 존중합니다.

위급상황에서 아동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이에 일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장 충돌이나 여타 비상사태 상황에서 더욱 증대되는 인권 위험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인권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합니다. 위급상황들은 아동 인권에 대한 위협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고, 장애가 있거나 추방된 어린이, 이민자의 어린이, 격리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그리고 토착민 어린이 등과 같이 특정 아동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아와 남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원을 위한 기업의 추진의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b. 위급상황에 영향을 받을 아동들의 인권을 지원합니다.

i. 위급상황 속에서 증가하는 아동 폭력, 학대, 착취에 대해, 직원들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비상사태로 영향을 받는 아동들을 보호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ii. 필요하거나 요구가 있을 경우, 우수 사례들에 부합하면서, 정부 당국이나 인도주의적 기관들의 긴급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측정된 필요에 기반해야 하고, 영향받은 주민에 대한 책임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iii. 지속가능한 평화와 개발에 긍정적인 공헌을 합니다.<sup>11</sup>

**우수 사례: 난민 아동들을 위한 기술 기반 교육**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한 국제적 컨설팅 회사는 난민 아동들에게 교육 자료를 전해주기 위하여 국제 기구와 협력하였습니다. 이 협력의 주요 계획은 차드(Chad) 동쪽 지역의 대략 3만 명의 난민 아이들에게 기술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업은 국제 기구가 진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행동, 제품, 측정기준을 정의하도록 도왔습니다. 주요 도전과제는 그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충돌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꾸준한 기간 동안 아동들에게 적절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기초 설문은 어린이 보호에 있어 주요 우려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기업은 난민의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고취시키는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up>11</sup> 예시 참고를 위하여 합동 유엔 글로벌컴팩트 -책임투자를 위한 원칙 간행물, "충돌의 영향을 받고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 내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지침", 2010를 보십시오.

[http://www.unglobalcompact.org/issues/conflict\\_prevention/guidance\\_material.html](http://www.unglobalcompact.org/issues/conflict_prevention/guidance_material.html)

**10. 모든 기업은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 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소년, 소녀들이 어린 시절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은 그들이 뛰놀고, 배우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때이며, 그들의 권리가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증진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 유엔 총회, 2002년 10월 11일.

**기업 책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a.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수입 발생을 위한 세금 납부를 포함하여, 법치 주의를 존중하고 책임있는 경영 사례를 이용하는 것은 정부의 아동 인권 보호 및 실현 의무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임을 인식합니다.

**지원을 위한 기업의 추진의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b.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 c. 아동을 위한 전략적 사회 투자 프로그램 수행을 고려합니다. 현존하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참여하고, 정부, 시민 사회,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 투자 프로그램을 이행합니다. 보건, 교육, 오락, 어린이 보호,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는 어린이들과 아동 권리 전문가들에 의해 우선 사항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우수 사례: 직원들이 모든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지지하다.**

한 글로벌 금융 기관은 전세계적으로 교육을 향상시키고,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모든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에 헌신해왔습니다. 이곳의 직원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 성공의 토대입니다. 2005년에 출범한 이래로, 이 금융 기관의 직원들은 많은 지역의 아동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금융 기관은 모든 기부금으로 보조하며 이러한 지원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1,300만 달러를 교육 프로젝트에 지원해왔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개요

다음 본문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공식적 개요입니다. 협약의 전문과 그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서문

본 서문은 유엔의 기본 규칙들, 그리고 몇몇 관련 인권 조약들과 성명들의 특정 조항들을 상기시킵니다. 이 부분은 아동이 그들의 취약성(vulnerability)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근본적인 가족의 배려와 보호라는 의무에 특히 강조점을 둡니다. 또한, 아동 출생 전, 후로 법적, 그리고 여타 보호에 대한 필요, 아동의 지역 공동체가 지닌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 또한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국제적 협력의 필수적 역할 등을 재확인 하고 있습니다.

### 제 1 조

아동의 정의.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 제 2 조

무차별.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권리는 모든 아동들에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입니다.

### 제 3 조

아동의 최상 이익.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들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제 4 조

권리의 실현. 국가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 5 조**

부모의 지도와 아동의 능력 발달. 국가는 부모와 확대가족이 아동의 능력발달을 위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존중해야 합니다.

#### **제 6 조**

생명, 생존, 그리고 발달. 모든 아동들은 고유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제 7 조**

이름과 국적. 아동은 출생시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있습니다. 국적 취득권도 지니고 있으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그들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제 8 조**

정체성의 유지. 당사국은 아동의 인정된 신분을 보존하고, 필요 시 기초적인 신분요소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이름, 국적 및 가족관계를 포함합니다.

#### **제 9 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아동은 그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또한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로부터 헤어진 경우에, 그 모두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 10 조**

가족의 재결합. 아동과 그의 부모는 재결합이나 아동-부모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제 11 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 귀환.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혹은 제 3 자로 인해

유괴당하거나 외국에 잔류하게 되는 경우 등을 방지하거나,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 12 조**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나 절차에 대해 그 의견이 고려될 권리 또한 있습니다.

#### **제 13 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얻고, 모든 사상과 정보를 국경과 관계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제 14 조**

사상, 양심 및 종교에 관한 자유. 당사국은 적절한 부모의 지도에 따르는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에 관한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 **제 15 조**

결사의 자유. 아동은 타인과 만나고, 집회를 형성하거나 가입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 16 조**

사생활의 보호. 아동은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권리, 또한 명예나 명성의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한 있습니다.

#### **제 17 조**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 당사국은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아동에게 보장하고,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퍼뜨리도록 장려하며, 아동들을 해로운 자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제 18 조**

부모의 책임.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일차적으로 공동책임을 가지고, 당사국은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아동 양육에 있어



부모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 19 조**

학대와 유기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부모나 아동 양육에 책임이 있는 이에 의한 모든 종류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고, 학대 방지와 피해 아동에의 조치 등을 위한 적절한 사회 프로그램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 **제 20 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 당사국은 가족적 환경을 박탈 당한 아동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적절한 대안적 보호방안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마땅히 아동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 21 조**

입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국가들에서 입양은 오직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과 부합되었을 때에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이 있는 관계 당국과 아이를 위한 보호수단과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 **제 22 조**

난민 아동. 난민 아동이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는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 조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당사국이 그러한 보호와 원조를 제공해 줄 권한이 있는 기구들과 협력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 **제 23 조**

장애아동. 장애아동은 특별한 배려, 교육, 그리고 자신이 전면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자립과 사회에의 통합을 최고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제 24조**

건강과 보건 서비스. 아동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건강,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 그리고 예방적 건강 관리와 공중 위생 교육의 제공에 특히 강조를

두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그 어떤 아동도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성에 결여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 25 조**

양육지정에 대한 주기적 평가. 양육, 보호 및 관리 등의 이유로 당사국에 의하여 양육지정을 받은 아동은 그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제 26 조**

사회 보장 제도. 아동은 사회 보험을 포함하여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제 27 조**

생활 수준. 모든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동이 적절한 삶의 기준을 가지도록 보장할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당사국의 책임은 또한 부모와 그들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제공을 포함합니다.

#### **제 28 조**

교육. 아동은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당사국은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모든 아동에게 장려하고,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하고, 또한 학교 규율이 아동의 권리 및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국은 이 교육에 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 **제 29 조**

교육의 목표.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아동이 자유사회에서 적극적인 성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동이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와

가치, 그리고 문화적 배경과 다른 이들의 가치까지 존중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합니다.

### **제 30 조**

소수 집단이나 원주민 아동. 소수 집단 사회나 원주민 아동은 자신 고유의 문화를 즐길 권리, 그들의 종교와 언어를 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제 31 조**

여가, 오락활동, 문화생활. 아동은 여가와 놀이, 문화적, 예술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제 32 조**

아동노동. 아동은 자신의 건강과 교육, 발전을 위협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국은 최저 고용연령을 규정하고, 근무 조건을 조절해야 합니다.

### **제 33 조**

약물 남용. 아동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거래에 관련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 34 조**

성 착취. 당사국은 매춘과 아동포르노그래피에 이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성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 35 조**

인신 매매 및 거래, 납치. 당사국은 아동 인신 매매 및 거래, 그리고 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 36 조**

다른 형태의 착취. 아동은 32-35조에서 다루지지 않은 아동 복지의 모든 측면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제 37 조**

고문과 자유의 박탈. 어떤 아동도 고문, 잔혹한 대우나 처벌, 불법적인 체포나 자유의 박탈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사형과 종신형은 부과될 수 없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구금된 아동은 가족과의 접촉뿐만이 아니라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제 38 조**

무력 분쟁. 당사국은 18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5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은 징병될 수 없습니다. 당사국은 또한 관련 국제법규에 나와있듯이,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하기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제 39 조**

건강 회복 및 사회 복귀. 당사국은 무력 분쟁고문, 학대, 혹은 착취에 희생된 아동이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 40 조**

청소년 사법 집행. 법에 저촉된 아동은,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자각을 촉진시키고,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고, 아동의 변호에 목적을 둔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 절차와 기관에의 배치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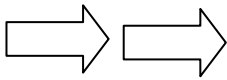
### **제 41 조**

더욱 높은 기준에 대한 존중. 아동 권리에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국내, 국제 법률에 명시된 기준들이 이 협약의 그것들 보다 더 높을 시에는, 언제나 그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제 42-54 조**

시행과 발효. 이 조항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협약은 20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 당사국이 협약의 비준 후 2년 이내에, 그 후로 5년 마다 제출하기로 되어있는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숙고할 아동권리위원회가 창설된다.
- 당사국은 언급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 때 보고서는 협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이행 중 이루어진 진척 상황에 대하여 다룬다.
- 당사국은 자국 내에 보고서에 대하여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엔과 자문관계에 있는 비정부 기구와 같이 자격이 있는 기구 및 유니세프, 유엔의 여타 특별 기관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등- 에 위원회 회의 참여와 해당 기구 활동 범위 내에서의 전문적 자문 제공을 요청하고, 기술적 자문과 도움에 대한 당사국의 요청을 위원회가 회부하도록 한다.
- 총회에 아동 권리 관련 특정 이슈들에 대하여 특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리. 이 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권리들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p>모든 기업들은</p> 	<b>1</b>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 인권을 지지하는 데에 충실해야 합니다.
	<b>2</b>	기업 활동이나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아동노동을 철폐하는 데에 기여해야 합니다.
	<b>3</b>	연소근로자, 부모 그리고 양육자들을 위해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b>4</b>	기업 활동과 회사 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b>5</b>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함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인권 지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b>6</b>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위한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합니다.
	<b>7</b>	환경, 토지 취득 및 이용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b>8</b>	안보조치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b>9</b>	비상사태로 영향받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b>10</b>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 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원문은  
다음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unglobalcompact.org/docs/issues\\_doc/human\\_rights/CRBP/Childrens\\_Rights\\_and\\_Business\\_Principles.pdf](http://unglobalcompact.org/docs/issues_doc/human_rights/CRBP/Childrens_Rights_and_Business_Principles.pdf)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www.unglobalcompact.kr)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5가 24번지 파크타워 103동 1705호 140-025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ungckorea@gmail.com